



世宗特別
自治市議會
Sejong City Council

제3회 세종시의회임시회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2012. 8. 31(목) 10:00

-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 -

검토보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의수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2년 8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정함
(안 제2조 및 제3조)

나.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중인 노사정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구성위원회에 지역주민 대표를 추가하여 위원회의 대표성을 높이는 한편,
- 협의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世宗特別
自治市議會
Sejong City Council

제3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2012. 8. 30(목) 14:00

-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

검토보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의수

-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

검토보고

1. 제안 경과

- 의안번호 : 제 232 호
- 발의자 : 이충열 의원 (찬성자 4명)
- 발의일자 : 2012. 8. 17
- 회부일자 : 2012. 8. 23

2. 제안 이유

-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농어업·농촌의 진흥과 발전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부 및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주요 내용

- 농어업 육성·발전과 농촌 개발에 관한 기본방향과 기본원칙을 정함 (안 제3조~제4조)
- 농어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시, 농어업인, 소비자 등 분야별 책무와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5조~제8조)
- 농어업인·농어업경영체·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제13조)
- 농어업·농촌 정책자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제19조)

4. 관련 법규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내수면 어업법」

5. 참고사항

- 관련부서 : 경제산업국 농업유통과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12.08.21 ~ 08.27(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 의견조회
 - 조회기관 : 세종특별자치시장(농업유통과)
 - 조회의견 : 의견 없음

6.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이충열의원이 2012년 8월 17일 대표발의(찬성자 4명)하여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시책 수립 및 지원으로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되는 조례라 하겠습니다.
- 현재까지 추진해 왔던 시책이나 추진중인 시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며,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본 조례의 내용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집행부 관련 실무부서(농업유통과)의 의견을 조회한 바 있으며, 조례안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조례제정 법 규정 준수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관내 농어업인·농어업경영체·생산자단체 등이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및 식품산업의 소득안정과 생활안정,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2.7.1] [법률 제11094호, 2011.11.22,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농어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11. "어장"이란 수생생물이 사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로서 어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어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어업경영의 효율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소비자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수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①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수산 분야 등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1.26]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타법개정]

제14조(시·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부교수·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9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내수면어업법

[시행 2010.10.16] [법률 제10293호, 2010.5.1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기수: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공공용 수면(公用 水面)"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내수면을 말한다.
3. "사유수면(私有水面)"이란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한다.
4. "수면관리자"란 공공용 수면 또는 사유수면을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5.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어도(魚道)"란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回遊性) 어류 등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



世宗特別
自治市議會
Sejong City Council

제3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2012. 8. 30(목) 14:00

-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의수

-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

1. 제안 경과

- 의안번호 : 제 242 호
- 발의자 : 세종특별자치시장
- 발의일자 : 2012. 8. 22
- 회부일자 : 2012. 8. 23

2. 제안 이유

- 자율방범 활동을 통한 범죄없는 생활환경 조성, 청소년 선도, 교통 및 기초질서 확립 등 지역안정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의 체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 제정목적, 용어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의거 제정목적, 지원단체에 대한 정의 및 적용범위를 정함.
- 자율방범대 임무 및 예산지원 내용 등(안 제4조 ~ 5조)
 - 임무 및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사항 등을 정함.
- 자율방범대 지도 및 감독, 포상 등(안 제6조 ~ 제9조)
 - 우수 자율방범대 및 대원에 대한 포상 및 감독사항을 정함.

4. 관련 법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규칙」

5. 참고사항

- 관련부서 : 건설도시국 재난방재과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12.07.20 ~ 08.09(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 규제심사
 - 부폐영향평가 : 이상없음
 - 성별영향평가 : 이상없음
- 세종특별자치시 조례규칙심의회
 - 심의일자 : 2012.08.21
 - 심의결과 : 원안의결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제7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내 각 읍·면·동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자율방범대 구성은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 운영규칙」 [개정 2080.9.18 예규 제 87호]제5조(자율방범대의 구성)에 따라 구성하며, 대원의 선임은 같은규칙 제7조(자율방범대원등의 선임)에 의하여 자율방범연합대장이 선임하며, 대원의 해촉은 같은 규칙 제8조(해촉)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 후 해촉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자율방범대 교육은 같은규칙 제12조(교육)에 따라 경찰서장이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각종 소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내 자율방범대는 2012년 6월 말 연기군 지역24개대와 장기면과 부용면 자율방범대 각 2개대가 편성 운영되고 있었으며,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는 현재 28개(남 14대, 여 1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2012년 하반기 지원액은 자율방범대 야간급식비19,710천원, 차량유지비 11,000천원, 상해보험료 14,200천원, 자율방범연합대 운영 2,500천원, 야간순찰 등 장비 구입비 1,000천원등 총 48,410천원의 소요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경찰, 지구대 또는 파출소 단위로 설치된 자율방범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 그 자체는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조례제정 취지와 절차, 상위법령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첨부사항

- 자율방범대 현황 및 예산지원현황 1 부.

관 련 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현황

□ 구성현황

- 구 성 : 28개대(남성 14, 여성 14)
- 인 원 : 710명(남성 480, 여성 230)

구 분	대 수			대원 수		
	계	남성대	여성대	계	남성대	여성대
계	28	14	14	710	480	230
조치원읍	8	4	4	211	149	62
연기면	2	1	1	46	26	20
연동면	2	1	1	72	50	22
부강면	2	1	1	70	48	22
금남면	2	1	1	47	27	20
장군면	2	1	1	70	40	30
연서면	4	2	2	57	42	15
전의면	2	1	1	47	34	13
전동면	2	1	1	49	36	13
소정면	2	1	1	41	28	13

※ 한솔동 : 미구성

□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계	운영비 (급식 유류비)	상해보험	피복비	연합대운영비	순찰차운영	등산대회
2012	97,860	44,120	10,000	19,640	5,000	9,600	12,000
2011	80,756	43,556	10,000	2,000	3,600	9,600	12,000